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673 |
|----------|------|

발의연월일 : 2016. 10. 18.

발의자 : 함진규 · 정종섭 · 정용기

박완수 · 박덕흠 · 김현아

이학재 · 주호영 · 이군현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서는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의 증가로 자본금 소요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본금 등록 필요성이 낮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u><단서 신설></u></p> <p>2. · 3. (생략) ③ (생략)</p> | <p>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u>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